



영국의 수산업지원 및 관련 법규

정보신청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부

I. 서설

섬나라인 영국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활동하여 번영을 누려왔다. 수산업에 관련해서도,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일찍 성문법규를 정비하여 관련 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였다. 이미 영국에서는 1705년 수산법(Fisheries Act 1705)이 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업에 대한 영국의 법률제정은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었는데, 주로 수산업자에 대한 규

제와 보호,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어선 및 어획장비 등에 대한 등록 및 규제, 어족자원의 보호 등을 위한 규범체계 등이 그러한 내용이다. 근래에는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과 진흥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법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되기도 한다.

1900년대 이후 영국에서 제정된 주요 수산업 관련 규범은 다음과 같다.

1903년 농업수산업위원회법(The Board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ct 1903)

1909년 농업수산업위원회법(The Board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ct 1903)

1912년 (북태평양) 물개사냥법(The Seal Fisheries (North Pacific) Act 1903)

1915년 수산업항구법(The Fishery Harbours Act 1915)

1933년 해양수산업법(The Sea-Fishing Industry Act 1933)

1938년 해양수산업법(The Sea Fish Industry Act 1933)

1951년 연어 및 민물수산(보호)법(The Salmon and Freshwater Fisheries (Protection) Act 1951)

1953년 흰살생선 및 청어 관련 산업법(The White Fish and Herring Industries Act 1953)

1955년 수산법(The Fisheries Act 1955)

1959년 해양수산업법(The Sea Fish Industry Act 1959)
 1962년 해양수산업법(The Sea Fish Industry Act 1962)
 1963년 수자원법(The Water Resources Act 1963)
 1964년 수산업제한법(The Fishery Limits Act 1964)
 1966년 해양수산규제법(The Sea Fisheries Regulation Act 1966)
 1967년 해양수산(조개류)법(The Sea Fisheries (Shellfish) Act 1967)
 1968년 해양수산업법(The Sea Fisheries Act 1968)
 1969년 트위드 수산업법(The Tweed Fisheries Act 1969)
 1970년 수산업법(The Fish Industry Act 1970)
 1973년 해양수산(조개류)법(The Sea Fisheries (Shellfish) Act 1973)
 1975년 연어 및 민물수산업법(The Salmon and Freshwater Fisheries Act 1975)
 1976년 수산업제한법(The Fishery Limit Act 1976)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수산업의 자원과 규제를 위한 규범이 수없이 제정되어 발전되어왔으며, 이것이 현재는 1981년에 제정된 수산법(The Fisheries Act 1981)으로 수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1981년 수산법의 제정과 규범의 구성, 이에 따라 설치된 해양수산청(The Sea Fish Industry Authority)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본다. 또한 수산법들과 같은 성문법들(Acts)의 제정으로 상황에 따라 하위규범도 마련되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명령인 2007년 해양어획제한명령을 중심으로 이러한 수산업 관련 하위규범도 검토해본다.

II. 1981년 수산법(The Fisheries Act 1981)

1. 법률의 제정

현재 영국의 수산업의 규율과 지원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문법은 1981년 수산법(The Fisheries Act 1981)으로 볼 수 있다. 1981년 수산법은 기존에 수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범들을 종합하면서,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업청(The Sea Fish Industry Authority)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법은 영국의 해양수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업의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1981년 수산법의 제정으로 이전에 마련되었던 관련 규범들의 개정 및 폐지도 상당수 이루어졌

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는 1976년 (스코틀랜드) 민물 및 연어수산업(The Freshwater and Salmon Fisheries (Scotland) Act 1976)의 적용이 스코틀랜드 외부인 트위드 강(River Tweed) 하류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밖에 1882년 제정되었던 스코틀랜드 수산위원회법(The Fishery Board (Scotland) Act 1882)의 일부규정들이 폐

지된 바 있다.

2. 1981년 수산법의 구성

1981년 수산법은 총 5장 46조의 본문과 5개의 이행계획들(Schedules)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규정들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장 해양수산업청

(THE SEA FISH INDUSTRY AUTHORITY)

설치, 임무, 권한(Constitution, duties and powers)

제 1 조 본청의 설치(Constitution of the Authority)

제 2 조 본청의 임무(Duties of the Authority)

제 3 조 본청의 권한(Powers of the Authority)

재정규정(Financial provisions)

제 4 조 기금(Levies)

제 5 조 기금 목적의 기록과 정보(Records and information for levy purposes)

제 6 조 융자권한(Borrowing powers)

제 7 조 정부융자(Government loans)

제 8 조 정부보조(Government grants)

제 9 조 정부보증(Government guarantees)

제 10 조 준비자금의 출자(Investment of reserve funds)

기타규정(Supplementary)

제 11 조 회계 및 보고(Accounts and reports)

제 12 조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Restriction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제 13 조 흰살생선위원회와 청어산업위원회의 폐지(Abolition of White Fish Authority and Herring Industry Board)

제 14 조 제 1 장의 해석(Interpretation of Part I)

제2장 해양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FINANCIAL ASSISTANCE FOR SEA FISH INDUSTRY)

- 제15조 재정지원계획(Schemes of financial assistance)
- 제16조 해양수산업청에 대한 계획운영(Administration of schemes by Sea Fish Industry Authority)
- 제17조 계획 관련 위반(Offences in connection with schemes)
- 제18조 제2장의 해석(Interpretation of Part II)

제3장 해양어업의 규제 (REGULATION OF SEA FISHING)

- 제19조 생선크기의 제한(Size limits for fish)
- 제20조 어선의 면허(Licensing of fishing boats)
- 제21조 생선의 선박간 이동에 관한 면허(Licensing of vessels receiving trans-shipped fish)
- 제22조 어획제한의 권한(Power to restrict sea fishing)
- 제23조 선박간 생선 이동의 금지(Prohibition of trans-shipment of sea fish)
- 제24조 위반에 대한 벌칙(Penalties for offences)
- 제25조 1967년 법의 시행(Enforcement of Act of 1967)
- 제26조 영국 해양수산감독공무원(British sea-fishery officers)
- 제27조 선박간 이동 관련 조항의 시행(Enforcement of provisions as to trans-shipment)
- 제28조 회사의 위반행위(Offences by bodies corporate)
- 제29조 관할권(Jurisdiction)
- 제30조 조례의 적용(Enforcement of Community rules)

제4장 양식 (FISH FARMING)

- 제31조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
- 제32조 연구, 개발, 권고(Research, development and advice)
- 제33조 보호규범 위반에 대한 예외(Exclusion of offences under conservation legislation)

제34조 조개류 또는 갑각류의 배양과 번식구조(Structures for propagating or cultivating shellfish)

제5장 부가 및 기타규정 (MISCELLANEOUS AND SUPPLEMENTARY)

제35조 고래의 규제(Regulation of whaling)

제36조 스코틀랜드에서 고래 반입 등(Landing etc. of whales in Scotland)

제37조 살아있는 생선의 수입(Import of live fish)

제38조 트위드 강에서의 어획위반(Fisheries offences on River Tweed)

제39조 수산업에 대한 보고서(Reports on fisheries)

제40조 북아일랜드 지역 연안의 수산업 보호(Fishery protection in waters adjacent to Northern Ireland)

제41조 명령과 계획(Orders and schemes)

제42조 회사의 위반(Offences by bodies corporate)

제43조 재정규정(Financial provisions)

제44조 일반적인 해석(General interpretation)

제45조 1967년 해양수산보호법 제22조 2항의 개정(Amendment of section 22(2) of Sea Fish (Conservation) Act 1967)

제46조 명칭, 폐지, 시행, 범위(Short title, repeals, commencement and extent)

이밖에, 5개의 이행계획들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계획- 해양수산업청(The Sea Fish Industry Authority)

제2계획- 해양수산업기금(Sea fish industry levies)

제3계획- 흰살생선위원회와 청어산업위원회: 경과규정(White Fish Authority and Herring Industry Board: consequential provisions)

제4계획- 양식업에 관한 예외(Exemptions for fish farming)

제5계획- 법률의 폐지(Repeals)



3. 법규의 내용

1981년 수산법은 제1장에서 기존의 관련 위원회들을 통일하는 해양수산업청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즉, 본법에 따른 해양수산업청은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의 최초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마련되는 기금을 통해 설치 및 운영되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는다. 제2장은 해양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수산업의 보호와 양식업의 진흥을 위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법은 각장에서 규율하는 내용들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는데,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회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효과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5장은 고래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규정들을 명시하였다. 즉, 어획에 있어서 생선의 크기에 대한 규제와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특정지역의 어획규제 등의 내용이 그러한 것들이다.

III. 해양수산업청(The Sea Fish Industry Authority)

영국 해양수산업청은 영국의 비정부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의 하나로, 1981년에 설치되었다. 현재 해양수산업청은 영국의

모든 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과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업청은 1981년 수산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기존의 청어 산업위원회(The Herring Industry Board)와 흰살생선위원회(The White Fish Authority)가 통합되면서 이들의 기능을 해양수산청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청은 4개의 관련 영국정부기관이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수산업 종사자 및 관련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기금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영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생선, 조개류, 갑각류 및 이들의 가공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해양수산업청은 수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와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 훈련 등의 사업은 주로 수산물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물 식당의 인증과 어업종사자, 수산물 도소매업자에 대한 훈련과 인증, 각종 절차의 개선책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영국 수산업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해양수산업청의 행정본부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Edinburgh)에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홍보, 수산업 시장 및 수산업 관련 문화의 진흥,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의 본부는 잉글랜드의 헐(Hull)에 있으며, 이곳에서는 수산업 기술개발, 해양기술훈련, 안전기준 및

표준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IV. 기타 수산업 관련 법률

1. 1992년 해양수산(자연산보호)법(The Sea Fisheries (wildlife Conservation) Act 1992)

1992년 해양수산(자연산보호)법은, 영국에서 시행중인 해양수산 관련법들에 따라 권한과 임무가 주어지는 주무장관 및 해당 관청에 대해 그 해당 권한과 임무의 이행에 있어 해양생물의 보호에 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짧은 법률이다. 본 법은 단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 관련 주무장관 및 해당 관청이 명시되어 있다.

즉, 주무장관이라 함은 농수산식품장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경우 수산업에 관련된 각각의 차관들,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농업부 담당이 각각 또는 통합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관련되는 해당 관청이란, 1966년 해양수산규제법(The Sea Fisheries Regulation Act 1966)에 따라 설치된 지역 수산위원회 또는 본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관청을 의미한다. 본 법에서 의미한 '해양수산법들'은 조개류와 민물로 회귀하는 연어, 송어의 어획을 포함한 현재 해양수산에 관련되는 영국의 모든 법규들이다.

2. 1967년, 1992년 해양수산(보호)법(The Sea Fish (Conservation) Act 1967,1992)

1967년 해양수산(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

어류의 어획, 반입,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고 해양자원의 권한있는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법은 주로 어류의 크기 등에 따른 어획 및 판매제한과 수산업 선박에 대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규제 및 제한을 위해서 본법은 각종 위반사항을 명시하면서 처벌규정을 두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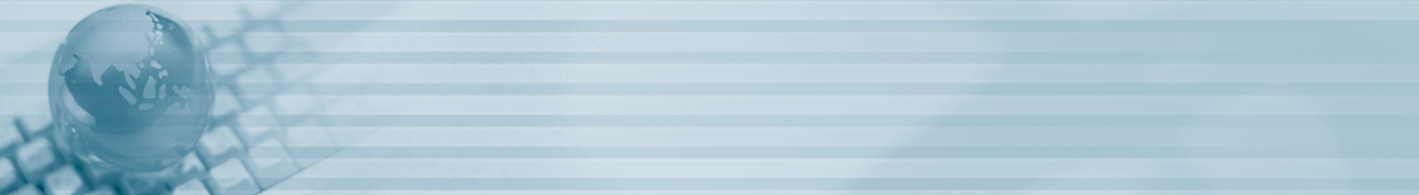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본법은 1992년에 제정된 해양수산(보호)법으로 일부규정의 내용이 개정 및 보장되었다. 1992년 법으로 보장된 내용은 선박의 면허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벌칙 및 관련 규범들이다.

V. 하위규범의 제정과 2007년 해양수산명령

1981년 수산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규범들의 개정과 폐지가 이루어졌고, 이후 관련 분야의 많은 하위규범 및 명령(Statutory instruments) 등이 만들어졌다. 또한 수산업계의 상황변화와 EU 내의 제도변화 등에 맞추어 영국 내의 규범들이 새롭게 마련되거나 기존의 규범들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2007년에 제정된 해양수산(제한)명령(The Sea Fishing (Restriction on Days at Sea) Order 2007)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해양수산명령의 제정

본 명령은 특정 해양어족의 수량보호와 어획기회의 확정을 위해 EU차원에서 마련된 규범(No. 41/2007)을 1981년 수산법 규정에 따라서 영국 내에서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 본 명령은 월단위로 운영되는 해양어획제한 기간을 명시한다. 본 명령은 이러한 기간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명시하면서, 본 규정이 적용되는 지리적인 보호지역을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어족의 보호를 위해서 저인망(Trawling)어선의 활동을 계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2. 명령의 구성

본 명령은 총 3장 2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

제1장 총론 (PRELIMINARY)

- 제1조 명칭 및 시행(Citation and commencement)
- 제2조 범위 및 적용(Extent and application)
- 제3조 해 석(Interpretation)

제2장 해양어획일수 (DAYS AT SEA)

- 제4조 영국(잉글랜드) 수산업 선박의 운용기간설정(Establishment of management periods for English fishing boats)
- 제5조 2007년 통보된 초기 운영기간에 관한 간주규정(Deeming provisions in respect of certain management periods notified in the early period of 2007)
- 제6조 운용기간의 위반(Offences in relation to management periods)
- 제7조 대구 회복지역과 넙치 회복지역에서의 어획기간할당(Allocation of days for fishing in the Cod Recovery Zone and Sole Recovery Zone)
- 제8조 어획기간할당 - 쌍끌이(Allocation of days - pair trawling)
- 제9조 기간할당의 조정(Adjustment of the allocation of days)
- 제10조 2007년 초기기간의 어획, 통보요건, 기간할당조정(Fishing in the early period of 2007, notification requirement and adjustment of allocation of days)
- 제11조 할당기간과 회복지역들에 관한 제한 등에 대한 위반(Offences in relation to allocation of days and other restrictions on presence in the Cod Recovery Zone and Sole Recovery Zone)

제12조 일정의 이동(Transfer of days)

제13조 일정이동의 위반(Offence in relation to transfers of days)

제14조 어획장치의 위반(Offences in relation to fishing gears)

제15조 항해일지의 유지와 관련 위반(Maintenance of logbooks requirements and related offence)

제3장 이행 등 (ENFORCEMENT ETC)

제16조 제3장의 해석(Interpretation of Part 3)

제17조 벌칙 및 항변(Penalties and defence)

제18조 벌 금(Recovery of fines)

제19조 어선과 관련된 영국 수산공무원의 권한(Powers of British sea-fishery officers in relation to fishing boats)

제20조 육지에서의 영국 수산공무원의 권한(Powers of British sea-fishery officers on land)

제21조 수색영장(Warrants to enter premises)

제22조 영국 수산공무원의 어류 및 어획장비 압수권한(Powers of British sea-fishery officers to seize fish and fishing gear)

제23조 공무원의 보호(Protection of officers)

제24조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Obstruction of officers)

제25조 회사의 위반행위(Offences by corporate bo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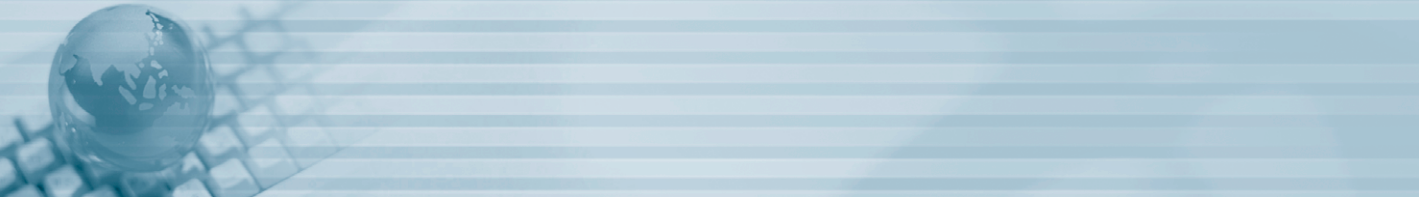
제26조 증거서류의 인정(Admissibility of documents in evidence)

제27조 개정(Amendment)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V. 결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오래전부터 수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꾸준히 마련하여왔다. 1981년 제정된 수산법(The Fisheries Act 1981)은 현재 영국의 수산업 지원 법규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산업 지원과 각종 연구 및 홍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업청(The Sea Fish Industry Authority)이 비정부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수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들에 따른 많은 하위규범과 명령 등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수산업 관련 규범의 특징은, 과거 수산업 규율의 효율성을 중시하던 점에서 점차 해양 자원과 어족의 보호를 위한 여러 기준들이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영국의 국내입법의 상당수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등 각 지역마다 다른 법규가 별도로 제정되고 있는 경우

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1981년 수산법이 영국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특이한 사항이다. 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해양수산업청 역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와 잉글랜드의 헐에 기능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수산업 관련 법규는, 영국내부의 문제와 함께 EU의 구성원으로서 수산업 관련 유럽의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수산업 지원 관련 규범의 내용을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하여 국내 수산업 상황에 알맞게 대응한 국내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고려할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